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11.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년 11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1999. 11.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 개정이유

◎ 98. 10. 10 제1592호로 공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 감축되는 공무원간 신분유지기준과 경쟁률 기준

1단계 구조조정 결과 98. 10. 10 공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라 감축되는 255명(일

반직 109, 기능직 73, 별정직 28, 고용직 44, 지도·연구직 1) 중 별정직 공무원 28명만 99. 12. 31일까지 신분을 유예시키고, 나머지 직종의 공무원 227명은 2000. 12. 31일까지 신분을 유예시키는 것은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감축되는 타직종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신분유예기간을 6개월 간 연장코자 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기회 제공으로 일반직 특채 응시자격 부여

99. 12월 안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공무원은 일반직(사회복지) 특채의 기회가 있는데, 현행 22명의 동 부녀봉사관 중 9명(98년 1월, 99년 8월)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취득하여 특채기회가 있으나, 13명은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일반직 특채의 기회가 없으므로 아들에게 신분유예기간을 2000. 6. 30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함.

○ 현행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 사회복지전문요원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별정직 공무원 1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확대 배치되는 사회복지직 26명은 정원의 증가로 인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98. 10. 10 제1592호로 공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 개정내용 : 별정직 신분유예기간 6개월 연장

※ 당초 1999. 12. 31일까지 신분유예 → 2000. 6. 30일까지로 변경

- 현 재직인원 : 22명(동 부녀봉사관)

○ 현행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 사회복지직 총인원 : 43명(도 승인)

※ 직급별내역 : 7급 16명, 8급 14명, 9급 13명

– 현원 :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 17명(7급 12명, 8급 5명)

– 순증가인원 : 26명

- 연도별 정원

1999년		2000년		2001년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1,982명	2,008명	1,913명	1,939명	1,841명	1,867명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근무 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내에 전원 교육이수가 가능한가? 그리고 2000. 12. 31일까지 1년 연장 안하고 6개월만 연장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로 6개월만 연장 조정하는 것임.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3월경에 있을 계획으로 통보 확인되었음. 대상은 현재 22명이 남아 있으며, 9명은 이미 자격증을 취득했고, 13명이 미취득했음. 최대한 교육 받도록 하겠음. 특채는 금년도에 한하며 내년도에 교육을 받더라도 특채계획이 없음. 금년도에는 특채 계획을 도에서 공고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교육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실시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경기도를 통해 교육을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받으면 모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니다. 교육이수 후 소정의 시험을 봄. 지난 번 교육이수자는 다행히도 9명 전원 자격증을 취득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번 교육이수자 9명은 어떤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선발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특채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 수 없다. 도 지침에 의거 도에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직렬의 감축대상 공무원도 유예기간 연장으로 구제 계획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2차로 또 210명을 퇴출시켜야 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 특채하고 필요없을 때는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상 공무원들의 불만이 노출.
- 신분유예기간 6개월 연장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기왕 연장하려면 1년 간으로 연장해야 함.

나. 반대토론

- 이미 본 조례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이 있고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 의회가 의결하여 공포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 구조조정의 의미로 볼 때도 유예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30호
의결년월일	99. 11. 12 (제74회)

제출년월일 : 1999. 11. 11

제출자 : 행정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1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98. 10. 10 조례 제1592호로 공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감축된 정원 255명의 신분유예기간이 별정직공무원 28명에 대하여는 99. 12. 31일까지로, 나머지 227명은 2000. 12.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 별정직공무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위하여 신분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 하여 2000. 6. 30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 본 조례규정에 의거 이미 공직을 떠난 별정직공무원과 다른 감축대상 직종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 의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결한 조례에 대하여 번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시행된 시책에 대하여 구제 차원에서의 행정을 수행한다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유예기간을 현행대로 99. 12. 31일까지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현재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사회복지직 정원을 26명 증원하려는 안은 개정안대로 증원하고자 함.

 주요골자

- 98. 10. 10 조례 제1592호로 공포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의 감축된 255명 중 별정직 28명의 신분유예기간을 99. 12. 31일까지에서 2000. 6. 30일까지로 하려는 안을 현행대로 99. 12. 31일까지로 함.

○ 사회복지직 정원 26명 순증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중 "1,841명"을 "1,867명"으로 하고, 제1호 "1,817명"을 "1,843명"으로 한다.

부 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2,008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84 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 명

「표2」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分	정 원
정원의 총수	1,939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15 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 명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841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u>1,817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생 략></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 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p> <p>「표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data-bbox="143 923 718 1183"> <thead> <tr> <th>구 분</th><th>정 원</th></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td><u>1,982명</u></td></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td><u>1,958명</u></td></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td>24명</td></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1,982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1,958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p>제2조(정원) <u>1,867명</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1,843명</u> 2. : 24명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p> <p>.....</p> <p>.....</p> <p>「표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data-bbox="756 923 1350 1183"> <thead> <tr> <th>구 分</th><th>정 원</th></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td><u>2,008명</u></td></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td><u>1,984명</u></td></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td>24명</td></tr> </tbody> </table>	구 分	정 원	정원의 총수	<u>2,008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1,984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p>제2조(정원)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p> <p>①<개정안과 같음></p>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1,982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1,958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구 分	정 원																	
정원의 총수	<u>2,008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1,984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표2」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정 원</th></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td>1,913명</td></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td>1,889명</td></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td>24명</td></tr> </tbody> </table> <p>②<생 략> ③<신 설></p>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1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8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p>「표2」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정 원</th></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td>1,939명</td></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td>1,915명</td></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td>24명</td></tr> </tbody> </table> <p>②<현행과 같음> ③98. 10. 10 조례 제1592호로 공포한 부천시지방 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 제2항의 별정직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3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1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8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3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841"명을 "1,867"으로 하고 제1호 "1,817"을 "1,84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2,008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8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표2」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3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②제1항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파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파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파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파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1」,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